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나206982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피고, 항소인 C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가합50477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5. 31.
판 결 선 고 2019. 7. 5.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¹⁾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나.항 기재의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가.항 기재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면서 나.항 기재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가. 주위적 청구취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사이에 2017. 9. 25.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73,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7. 9. 25.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7. 10. 12. 접수 제719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를 통한 위 부동산의 원물반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부분의 가액인 7,35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억 8,900만 원 - G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1,550만 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가액배상으로 7,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9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G이 2018.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8. 12. 6. 위 법원 P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임의경매절차가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나아가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G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써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11행의 "가격자문컨설팅(갑 제12호 증)"을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선재

 판사 구자현

 판사 최승원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시 K에 있는
L건물 M동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광주시 K 대 820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N, 철근콘크리트구조 제3층 O호 51.76m²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820분의 74.26. 끝.